2025년도 노사문화

우수기업 및大賞

노사가 함께 더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사업장을 찾습니다









-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·지원
- → 이를 통해 상생·협력의 <mark>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신</mark>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



- '96년부터 「노사협력 우량기업」을 선정,「노사협력 우량기업」 중 탁월한 기업에게 「노사화합대상」 시상
- '00년, 「신노사문화우수기업」 및 「신노사문화대상」 으로 명칭 변경
- '05년.「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」으로 변경
- '08년부터 「노사문화우수기업 및 大賞」 선정업무를 노사발전 재단에 위탁·수행

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현황



※ '15년~'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420개사, 노사문화大賞 총 100개사 선정·시상





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



기본 방향

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·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공개 경쟁으로 선정·지원
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신청

① 신청자격

- (우수기업)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공고일 기준)
 -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
- (大賞) '23~'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
[결격사유]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 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「국세기본법」「관세법」「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
-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)로 기소된 사업장





② 신청방법

■ 신청기간

- 우수기업: 2025. 3. 6.(목) ~ 4. 11.(금) - 大 賞: 2025. 7. 16.(수) ~ 8. 19.(화)

■ 신청서류

번호	구비서류	서류양식	작성방법
1	지원신청서	붙임 1	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
2	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	붙임 2	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(A4 50페이지 이내)
3	추진실적 증빙자료	-	PDF 파일로 제출
4	납세증명서	-	국세청 발급 후, 스캔본 제출

^{* &}lt;붙임]> 신청서 및 <붙임2>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양식 참조

■ 신청방법

-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osa.or.kr)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

회원가입	서류작성	온라인 신청	서류 업로드
홈페이지 ⇒ 회원가입 ⇒ 로그인	재단소식 ⇒ 사업공고 ⇒ 해당사업 신청공고 ⇒ 첨부 양식 다운로드	주요사업 ⇒ 사업일정 ⇒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大賞 ⇒ 기업인증 후 신청서 작성	구비서류 를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업로드

- 반드시 노·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
- *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
- 중소기업·대기업·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
- ·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* 기준

- 제조업:500명 이하
- 광업, 건설업, 운수·창고업, 정보통신업, 보건업 등: 300명 이하
- 도매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금융·보험업 등: 200명 이하
- 그 밖의 업종: 100명 이하
- 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-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





2 심사 및 선정

① 심사위원회 구성

-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
 - 노사관계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
 - *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<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위원회 >

- 당연직 위원(2인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 및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- 지명직 위원(5인 이내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이 추천하는 전문가

<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 >

- 당연직 위원(2인): 노사협력정책관,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- 지명직 위원(5인 이내):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

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·선정

<1> 사전검증 실시(지방관서)

- 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해당 여부,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시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(불임 3 사전검증서 작성)
 - ⇒최근 2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인용재결(구제명령) 여부
 - ⇒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
 - ⇒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여부
 - 사전검증서 작성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'노사발전재단 통합정보시스템(관리자페이지) 에서 해당 사업장의 심사자료 탭에 업로드, 1차 서면심사 점수에 반영
 -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직전 2년간* 사업장 감독 실시 내역과 신고사건 조사내역 (노사누리 전산 조회 결과) 함께 제출
 - * 조사 기간 : (우수기업) '23.1.1.~'25.4.11. (우수기업 신청마감일까지)
 - (大 賞) '23.1.1.~'25.8.19. (大賞 신청마감일까지)





-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
 - 동일 사안으로 감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를 감점

감점 기준

-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(1건당 15점)
-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(1건당 15점)
-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*된 경우(1건당 10점)
 - *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체불 확정이 되었을 때
- *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은 심사제외

<2> 1차 심사(서면심사) *<불임 4> 1차 서류심사 기준 참조

■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- 취득점수를 평균하여 만점(1,000점)의 90%(900점) 이상 획득한 사업장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 (1,000점±가·감점)
노사관계	-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- 노사관행 개선실적	100점
노사문화 실천요소	-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- 인적자원 개발·활용 -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 -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-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- (가점) 일터혁신 인증 기업(10점)	5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-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- 노사의 사회적 의무 -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- (가점)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구성 + 상생협력체결(20점)	400점
(감점)	- 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	100점 한도





<3> 2차 심사(사례 발표) *<불임 5> 2차 사례발표 심사 기준 참조

- 1차 심사 통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심사
 - 사례발표는 8개 지역별 「경진대회」 형식으로 개최, 필요시 현지 실사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(700점)
노사관계일반	-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및 극복 사례,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100점
열린 경영 및 노동자 참여	- 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,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	100점
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- 프로그램 내용, 교육훈련의 만족도 및 효과성, 공정한 인사관리,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	100점
임금 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	- 산업평균 대비 임금 수준, 급여증가율, 임금 격차 해소 노력	50점
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- 근로복지시설 운영·개선, 작업환경 개선,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의 노력 및 효과성, 일·생활 균형 실현	1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- 기업 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, 원·하청 간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,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 정도	200점
발표태도 및 기법	- 발표태도 및 노사 대표자 참여도 등	50점

<4> 선정

- 2차 심사에서 만점(700점)의 85%(595점) 이상을 획득한 사업장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 - * <붙임 6>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시 유의사항
 - 선정된 사업장은 본부의 검증 및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
 - * 청(대표지청)은 선정(내정) 즉시 본부 보고 → 본부는 각 실·국에 조회 등 검증실시 및 필요시 지역별로 중복 사업장 조정의견 통보 → 청(대표지청) 최종 확정
- 30개소 내외 선정 예정

③ 노사문화 大賞 심사·선정

<1> 대상(大賞) 규모(안)

- 대통령상 2점, 국무총리상 2점, 장관상 6점 선정 예정
- 노사문화大賞 신청 사업장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'25년 시상규모의 1.3~1.4배수 범위 내에서 2차 사례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





<2> 2차 심사(사례발표)

- 노사발전재단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노조측(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)의 수상의사 재확인
- 1차 심사 통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「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(사례발표 및 질의응답)」를 개최하여 2차 심사 취득점수에 따라 노사문화大賞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 - * 노사발전재단은 大賞 신청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검증 의뢰
 - *1.2차 심사기준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 적용
 - *<붙임 6-1, 7> 노사문화大賞 심사 시 유의사항, 현지실사 조사서 참조

(4) 선정 사업장 지원 (<불임 8>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참조)

- (유효기간) 우수기업·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
- (지원내용)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

3 선정 취소 (우대조치 철회)

① 요건 및 효력

<1> 선정 취소

-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선정되기 이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 취소
- 선정이 취소된 경우, 취소된 날로부터 우대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박탈
 *소속 사업장이 선정취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<2> 우대조치 철회

- 선정 이후 혜택 유효기간 내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철회(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 개최)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해 체불사업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③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④ 중대산업재해(중대재해처벌법) 또는 중대재해(산업안전보건법)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




- ⑤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) 또는 고액임금 체불(10억원 이상)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⑥ 사회적 물의 발생으로 수시 특별감독 실시 결과 노동관계법 10건 이상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
- 우대조치가 철회된 경우, 철회된 날로부터 우대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박탈
 *소속 사업장이 선정철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② **3 3**

■ 유효기간(3년) 동안 심사위원회 개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여 결정

③절차

- 매 반기 말 또는 사유 발생 시에 과거 3년간의 결격사유 조회(청·대표지청) → 결격 사유 발생 확인
 → 해당 사업장 조사(지방관서) → 심사위원회* 개최 및 심의 결정(관할 지방청·대표지청·본부) → 취소 또는 철회
 - * 선정당시 또는 최근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·운영 원칙, 청(대표지청)은 심사결과를 본부·지방관서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

4 시상 및 홍보

① 선정 공고

■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

② 시상식 및 인증서·인증패 전수

-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·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노사문화大賞 시상식: 12월 중 개최

③홍보

- 공고, 우수사례 영상 제작,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
- 언론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시리즈 기사 게재





5 추진일정

구분	추진일정	비고
▶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	3.6. ~ 4.11.	▶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(www.nosa.or.kr)
▶서류검토 및 사전검증	4.14. ~ 4.18.	▶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감독관)
▶심사준비	4.21. ~ 4.25.	▶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, 노사발전재단 ▶감점기준 및 결격사유 등 조회
▶지역1차 심사(서류심사)	4.28. ~ 5.9.	▶8개 지방청·대표지청별로 심사
▶현지 실사(필요시)	5.12. ~ 5.21.	▶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
▶지역2차 심사(사례발표)	5.22. ~ 6.4.	▶'경진대회' 형식으로 개최
▶심사결과 보고	~ 6.5.	▶즉시 본부 보고(청·대표지청)
▶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	6.27.(예정)	▶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
▶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	7월 중	▶권역별 계획 수립
▶노사문화 大賞 신청접수	7.16.~ 8.19.	▶'23년~'25년 우수기업 ▶노사발전재단
▶심사준비 및 사전검증	8.20. ~ 8.29.	▶노사발전재단
▶大賞 1차 심사(서류심사)	9.1. ~ 9.9.	▶13~14개 기업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
▶현지 실사	9.10. ~ 9.23.	▶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▶大賞 2차 심사(사례발표)	10월 초	▶大賞 선정 및 훈격 결정
▶노사문화大賞 공고	10.20.(예정)	▶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
▶우수사례 영상 제작 등	11~12월 중	▶우수사례 영상 제작·배포
▶시상식 개최	12월 중	▶시상 및 합동시상식 병행 ▶보도자료 배포

[※]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
노사문화 우수기업‧大賞 신청서

※ 해당사항에 첫표 하세요

① 신청구분		ㅁ기일	업단위 □ 사업장단위		(2	기업구분	□ ₹	- - - - -	l업	□ 대기	업	□ 공공기	l관	
		노사발	노사발전재단 사업 참여 여부		! !	□ 교육 □ 컨설팅 □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□ 전직지원 서비스 □ 인증·포상(수상한 인증·포상명 기			기재)					
@ JIOH+110	н	한글						4) 업종	5				
③ 사업체명	5	영문		※ 대·소	문자구	분:	표기	(주성	생산	풀)				
③-1 사업주	성명					_	·2 사업주 책(직위)							
⑤소재지		(우)												
⑥ 노동조합	5 h	□ 있음(노동조합	<u> 명</u> 기자	H)	늘	수노조				유	ㅁ무		
@ <u> </u>	=	□ 없음(<u>노사협의</u>	<u> 회명</u> 기	(재)	ć	상급단체	□한	국노	총 🗆	민주노	총 [□ 미가입∙:	기타
⑥-1 노동지	比出				6-2	노동	자대표	직 통	5					
(노조대표계	대) 성명			((노조디	扭	자)연락처	휴대진	설화					
⑦ 노동자수 (노동조합원) ((명 명)	8	자본금	금		원	원 ③ 연매출액		원			
⑩ 사업자등	록번호		⑩-1 산재보험괸			리번호								
(법인등	록번호)	() ⑩-2 고용보험관		리번호									
⑪ 사업개시	시일		년 윌 일 <mark>⑫前노사문</mark>		화 우수	기업	선정시	기			년			
⑬ 사업장	사업	장명		소 재 지			노동자수	주생산품						
현황														
※사업장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														
	부/						O1=1+1	직통						
담당자 직 성		책				연락처	휴대전	화						
		명				e-mail								
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						지	방고용노동경	정		지청(출장소)			
결격사유 조회 동의 여부		의 여부					청 기업의 신 □동의, □부		지도	감독 8	등 법위	라 여 ^년	부를	

2025년도 「노사문화 (우수기업) · (大賞)」 으로 선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⑭ 사 업 주: (서명)

⑤ 노동자대표: (서명)

(복수노조 대표) (서명)

지방고용노동(지)청장,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귀하

신청서 작성요령

1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가. 신청서와 부속서류인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* 허위서류 작성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
- 나.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소정양식에 따라 실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·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계량단위로 표시되는 실적은 계량화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요약 설명
- 다. 해당 사실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시기를 명확히 표시

2.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

- ① 신청구분 : 신청단위가 기업단위(기업 전체)인지 사업장단위(공장, 지사)인지 표시
- ② 기업구분
 - (중소기업)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업종	규모	비고
제조업	500명 이하	
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업, 과학·기술서비스업, 보건업·사회서비스업	300명 이하	중소기업 중소기업 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
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, 여기관련 서비스업	200명 이하	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위 업종 외의 산업	100명 이하	

- (공공기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함
- ③ 사업체명 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)을 한글과 영문(영문인증서에 사용됨)으로 정확하게 기입
- ③-1, ③-2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성명과 직책(직위)를 기입

- ④ 업 종: 신청기업의 사업종류를 기입(예, 화학제품제조)
- ⑤ 소 재 지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주소를 기입
- ⑥ 노동조합: 노동조합 유무, 복수노조 유무, 상급단체 기입, 노동조합명(노사협의회명) 기입
- ⑥-1, ⑥-2 :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 자위원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
- ⑦ 노동자수 : 신청일 기준 노동자수 합계(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수)를 기입하고 노조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조합원 수를 괄호 안에 기입
- ⑧ 자본금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- ⑨ 연매출액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- ⑩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입
- ⑩-1 산재보험관리번호:
 - * 사업장 단위 신청시 ⑩-1에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 - * 기업단위 신청시 ⑩-1에 본사의 산재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하고 '⑬사업장현황'에서는 소속된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- ⑩-2 고용보험관리번호 :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재확인 위해 기재 필수
- ① 사업개시일 :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 (합병에 따른 사업 승계 시는 그 이전 사업 개시일 기재)
- ⑩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시기 : 우수기업 선정 시기를 명시(예: '20년)
- ③ 사업장현황: 기업단위의 경우 여러개의 사업장(공장, 지사 등)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기입
- (4) 기업단위는 사업주가 서명하고. 사업장 단위는 사업장 대표자가 서명
- (B)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가 서명
- ※ 모든 업무연락은 e-mail을 이용하므로 e-mail주소를 정확하게 기재

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1. 사업장 일반현황

■ 노사개요

사업체	노동조합(노사협의회)				
▶명 칭:	▶명 칭:				
▶소 재 지:	▶상급단체:				
▶ 대 표 자 :	▶대 표 자 :				
▶노동자수:	▶조합원수:				
▶업종 및 주요생산품 :	▶설 립 일 :				
▶설 립 일 :	▶임<단>협만료일:				
▶연 락 처 :	▶연 락 처 :				
▶ 연 혁:	▶연 혁:				

■ 노사관계 변천사

※ 당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천 과정을 약술

■ 노사관계 안정요인 및 계기

- ※ 갈등을 겪은 후 안정되었다면 그 배경, 계기, 안정요인 등을 기술
- ※ 갈등 관계가 없이 계속 안정을 유지하였다면 안정요인 등을 기술

2. 노시상생협력 추진 체계도

- ※ 노사상생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 및 비전 등을 기술
- ※ 현재 운영중인 갈등관리 방식(체계) 등을 기술

3. 기업경영 현황

※ 단위사업장의 경우, 기업의 총액도 함께 기술

(단위:원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]. 연간 매출액			
- 연간 매출액(증가율)			
2. 당기 순이익			
- 당기 순이익(증가율)			
3. 1인당 노동생산성 (매출액 / 전체 노동자수)			
4. 인건비 총액			
-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			
5. 임금			
- 전 직원 평균임금			
- 평균임금 중 변동급 비중			
- 신입사원(남성) 평균임금			
- 신입사원(여성) 평균임금			

4. 노동환경 현황

1. 고용 - 노동자 수 -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- 이직률 - 명예퇴직 실시여부 - 비정규직 노동자 수 - 여성 노동자 수 - 여성 관리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대인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 - 협렴사안 동반성장 정책소리 여부	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-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- 이직률 - 명예퇴직 실시여부 - 비정규직 노동자 수 - 여성 노동자 수 - 여성 관리자 수 - 장네인 노동자 수 - 장네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・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새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1. 고용			
- 이직률 - 명예퇴직 실시여부 - 비정규직 노동자 수 - 여성 노동자 수 - 여성 관리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교 노동시간 - 평교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 생활 균형 - 전체 육이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이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이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노동자 수			
- 명예퇴직 실시여부 - 비정규직 노동자 수 - 여성 노동자 수 - 여성 관리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			
- 비정규직 노동자 수 - 여성 노동자 수 - 여성 관리자 수 - 장네(55세 이상) 노동자 수 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이직률			
- 여성 노동자 수 - 여성 관리자 수 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명예퇴직 실시여부			
- 여성 관리자 수 - 장애인 노동자 수 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비정규직 노동자 수			
- 장대인 노동자 수 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여성 노동자 수			
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수 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여성 관리자 수			
2. 노동시간 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새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장애인 노동자 수	*	+	*
- 주당 평균 노동시간 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			
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2. 노동시간			
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주당 평균 노동시간			
3. 일·생활 균형 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			
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 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			
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 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3. 일·생활 균형			
4. 안전보건 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			
- 산업재해 발생건수 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			
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 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4. 안전보건			
5. 상생협력 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산업재해 발생건수	*	+	*
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			
	5. 상생협력			
- 협력사아 동반성장 정책수립 여부	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		
	- 협력사와 동반성장 정책수립 여부			

5.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- ※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순서대로 기술하되, 세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실적도 포함
- ※ '23.1월-신청시점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

[요약자료]

대항목	세 부 항 목	추진실적(신명조 13p) (요약하여 개조식 기술)
l . 노사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	▶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 (요약)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▶추진실적 기술(요약)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▶추진실적 기술(요약) (이하 같음)

[※] 심사항목의 서류심사 기준의 항목순서에 따라 한글(신명조), A4종 형태로 5쪽 이내 작성

[심사자료]

대항목	세부항목(신명조 13p)	추진실적(신명조 13p)
l . 노사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(신명조 11p)	▶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▶추진실적 기술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▶추진실적 기술 (이하 같음)

[※] 심사항목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글(신명조), A4 형태로 50쪽이내 작성하되 추진실적 증명자료는 뒤편에 붙임 순으로 첨부

1차 서류심사 기준

■ 사업체명: ■ 위원명: (서명)

		평점						
대항목	세부항목	배점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	
총점		1000						
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	50						
	▶ 대립·갈등적 요소 극복 사례							
1.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50						
노사 관계	 ▶ 개선이유 ▶ 노사공동 협의 개선여부 ▶ 개선내용 - 구체적 개선내용과 단협·취업규칙 개정 여부 							
	1.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	100						
비. 노사 문화 실천 (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▶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(노사공동워크숍, 노사관계진단, 일터혁신 관련 교육 및 컨설팅, 설문조사, 벤치마킹 등) 실시 관련 - 프로그램 도입 이유 및 의사결정 과정 (노사공동기구 설치 · 운영 등) - 각종 프로그램별 실시 성과 -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등							
요소	(2) 현장개선활동에 노동자 참여 정도 ▶ 노동자나 노조 의견수렴 후 현장 개선 활동 실시 여부 등 ▶ 의사결정권을 작업부서 단위로 이양한 정도, 이양된 권한의 내용·성과 등 ▶ 현장 노동자들의 품질관리나 기계장비 보전업무 (예: My machine 운동) 수행정도 등							

			평점					
대항목	세부항목	배점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	
	2. 인적자원 개발·활용	100						
	(1) 프로그램의 내용의 충실도 ▶ 직종, 직급, 연령, 성별 및 내 · 외부, 온 · 오프, 신입 · 재직자 · 전직자 교육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시행여부 ▶ 프로그램 운영 -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 여부 - 노동자 및 노조 의견수렴 정도 ▶ 프로그램 효과성 - 노동자 만족도, 효과성(생산성 향상 등)							
	(2) 투자규모 ▶ 수혜폭 : 년도별 교육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(수강노동자/ 상시노동자) ▶ 훈련시간 : 년간 노동자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 ▶ 훈련투자규모 : 교육훈련비용/임금총액 ※재무제표상 교육훈련비용 기재							
비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(3) 공정한 인사관리 ▶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- 채용·배치·이동·승진·평가 등의 공정성 - 불합리한 인사관리 체계 개선 ▶ 생산직/영업직 노동자의 관리직(임원) 수 ▶ 여성노동자의 관리직(임원) 수							
	(4) 고용안정노력 ▶ 일자리나누기,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노력,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▶ 전직지원 등의 고용안정지원							
	3.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	50						
	(1) 적정 임금수준 보장 ▶ 신규입사자 임금수준(초임수준) ▶ 1인당 연평균 급여 수준(산업평균 수준 여부) ▶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가율/물가상승율 반영 정도							
	(2) 임금격차 해소 노력 ▶ 최고/최저, 각 직급별 임금격차 적정성 ▶ 최고/최저, 각 직급별 임금격차 해소 노력							

			평점					
대항목	세부항목	배점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	
	4.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150						
	(1) 근로복지 시설운영 및 개선 ▶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- 휴게실, 직장 동호회 지원, 체육시설 설치, 휴양소, 직장보육시설, 기숙사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 ▶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							
	(2) 근로복지기금 및 자금 지원 ▶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적 및 비율 ▶ 저소득 노동자 지원, 주택자금, 학자금 지원 등 기업별 복지제도 운영실적							
비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(3) 장시간 근로 개선 ▶ 법정노동시간 준수 여부 ▶ 노동시간 단축 및 효과성, 노사간 합의 여부 등 ▶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노력 ▶ 유연근무제 활용률, 연차휴가 사용률 등 장시간 근로 개선 노력 정도							
	(4) 근무환경 개선 ▶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사례, 작업환경의 인간화를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례 ▶ 일·생활 균형 실현 사례 등							
	5.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	100						
	 ▶ 선진 노사문화 실천에 따른 경영성과, 분야별 우수사례 및 향후 계획 등 (지난 2년간 변화된 상황 중심) ▶ 전반적인 우수성 및 독창성 ▶ 정착노력, 개선실적 및 성과 ▶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가능성 							
	(가점) 일터혁신 인증 가점	+10						

		평점					
대항목	세부항목	배점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	1.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	250					
	 (1) 기업내 상생협력 ▶ 비정규직, 외국인노동자, 장애인, 여성노동자 등 취약 계층 처우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의 양보·배려 ▶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 ▶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						
Ⅲ. 노사의	(2) 원·하청간 상생협력 ▶ 원·하청 노사간 공동워크숍, 상생협력관계 진단, 상생 협력 교육 및 컨설팅, 공동훈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▶ 원·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천협약,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, 공유가치 창출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실적 ▶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▶ 원·하청간 공동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						
	(3) 원·하청간 공정거래 ▶ 협력사와 동반성장정책 수립 ▶ 협력사와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 ▶ 공정한 구매/조달시스템 운영, 적정 납품가 보장 ▶ 상생결재시스템 이용						
사회적	2. 노사의 사회적 의무	100					
책임	 (1) 지역사회 참여 ▶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 ▶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노사의 사회봉사활동 ▶ 지역주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반영 ▶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유무(대기업) 						
	(2) 지역사회 투자 및 기여도 ▶ 공급업체 선정시 지역공급자 배려 정책 ▶ 노동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▶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▶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(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)						
	3.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	50					
	▶ 장애인 의무고용,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수 정도▶ 퇴직연금 가입여부▶ 고용창출 실적 노력						
	(가점)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구성+상생협력 체결	+20					
	발생 건당 감점	-100		(초	ICH -10	0)	
(감점) ▶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▶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 ▶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(기소송치 제외)			()건 x 15점 ()건 x 15점 ()건 x 10점				

2차 사례발표 심사기준

평가					평점		
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총점		700					
① 노사관계 일반	 ▶ 노사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와 극복 사례(최근 2년) ▶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 여부 및 구체적 개선사항 	100					
② 열린경영 및 노동자 참여	▶ 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이 다양성▶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▶ 선진 노사문화 실천사례 및 향후 계획	100					
③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 ▶ 주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례 ▶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 만족도, 효괴성 등 ▶ 일자리나누기, 배치전환, 전직지원 등 고용유지노력을 통한 고용안정 실천사례 ▶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	100					
④ 임금적정성과격차해소	▶ 물가반영 임금인상 등 적정 임금수준 보장▶ 임금격차 적정성과 격차해소 노력	50					
⑤ 근로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	 ▶ 휴게실·동호회지원·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주요 복지 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 ▶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등 작업환경 개선 사례 ▶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 노력 및 노동시간 단축 효과성 ▶ 일·생활 균형 실현 사례 	100					
⑥ 노사의 사회적 책임	 ▶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- 비정규직,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과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노력 -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개선 ▶ 원·하청간 공동훈련, 동반성장 협약체결,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지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▶ 원·하청간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, 공정한 구매조달시스템 운영, 상생결재시스템 운영 등 ▶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정책수립 ▶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기여 ▶ 장애인의무고용율 및 고령자기준고용율 준수, 퇴직연금가입 등 노동정책 이행수준 	200					
⑦발표기법	▶ 발표태도 및 기법 - 노사 대표자 참여정도 감안 등	50					

[※] 사례발표심사 자료는 파워포인트(30매 이내)로 작성하여 별도 요청일까지 제출

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시 유의사항

1차 심사(서류심사)

- 신청기업이 제출한 노사문화 추진실적을 각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기준(불임 4)에 따라 심사
- 총 배점 1.000점±가·감점 중 900점(만점의 90%) 이상인 기업을 통과
- 감점 항목은 사전검증 조사결과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감점처리 하되, 감점 최대한도는 -100점까지 감점
-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는 1건당 15점씩 감점
-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, '과태료 부과' 사례는 1건당 15점씩 감점
-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으나 기소 송치를 하지 않는 경우 1건당 10점씩 감점
- 심사점수는 항목별 배점 내에서 경중에 따라 5단계 척도로 평점하고 심사위원별 총 평점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
- 서류심사 시 심사기준상의 예시에만 치우치지 말고, 그 기업의 특수한 제도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

2차 심사(사례발표)

-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·응답을 통해 심사
- 심사위원회에서 사례발표 심사기준(불임 5)에 따라 총 배점 700점 중 595점(만점의 85%) 이상인 기업을 선정
- 제조업종 이외 다양한 세부업종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 *세부업종: 제조, 운수, 통신, 건설, 의료, 서비스, 공기업, 기타업
- 심사점수는 항목별 배점 내에서 경중에 따라 5단계 척도로 평점하고, 심사위원별 총 평점 점수 전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

노사문화 大賞 심사 시 유의사항

1차 심사(서류심사)

- 신청기업이 제출한 노사문화 추진실적을 각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기준(불임 4)에 따라 심사
- 총 배점 1.000점±가 감점 중 고득점 순으로 2차 심사대상 13개 기업 내외로 선발
- 감점 항목은 사전검증 조사결과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감점처리 하되, 감점 최대한도는 -100점까지 감점
-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는 1건당 15점씩 감점
-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, '과태료 부과' 사례는 1건당 15점씩 감점
-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으나 기소 송치를 하지 않는 경우 1건당 10점씩 감점
- 심사점수는 항목별 배점 내에서 경중에 따라 5단계 척도로 평점하고 심사 위원별 총 평점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
- 서류심사 시 심사기준상의 예시에만 치우치지 말고, 그 기업의 특수한 제도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

2차 심사(사례발표)

-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·응답을 통해 심사
- 심사위원회에서 사례발표 심사기준(불임 5)에 따라 총 배점 70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
- 심사점수는 항목별 배점 내에서 경중에 따라 5단계 척도로 평점하고, 심사위원별 총 평점 점수 전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

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지원내용	노사문화 대 상	노사문화 우수기업	담당기관	
<행정상 우대 >				
▶정부포상	대통령·국무총리상, 고용노동부장관상	인증서·인증패		
▶정기근로감독	면 제(최장 5년)	면 제(최장5년)		
▶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	2.5점 가점	2.5점 가점	고용노동부	
▶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	
▶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	제작·송부	제작·송부		
▶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0.5점 가점	국 방 부 (재정회계담당관)	
▶계약 적격심사시 우대	0.1점 가점	0.1점 가점	방위사업청 (계약제도발전과)	
▶세무조사 유예 (모범납세자에 한함)	1년(2년: 국덕	-총리상 이상)	국 세 청	
▶납세담보 제공 면제 (모범납세자에 한함)	2년(3년: 국5	무총리상 이상)	(납세자보호담당관)	
▶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중소기업벤처부	
▶ 현역인원배정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(인력정책과)	
▶클린사업 인증시 우대	최우선 선정	2점 가점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
▶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	5점 가점		(지원계획부)	
<금융상 우대 >				
▶대출금리	0.1% 우 대	0.1% 우 대	농협	
▶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	우대	우대	신한, 하나, 국민	
▶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대	우대	신용보증기금	

[※]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

[참고]

◆ 노사문화 우수기업 · 大賞 접수처 : 노사발전재단

(우)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층 노사협력팀

문의 및 접수: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

Tel. 02-6021-1062 Fax. 02-6021-1488

https://www.nosa.or.kr

◆ 노사문화 우수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
서울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2-2250-5726
서울강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465-8416
서울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142-8849
서울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077-6133
서울남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639-2231
서울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950-9819
서울관악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282-9048
중부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32-460-4561
인천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540-7956
부천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714-8746
의정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850-7754
고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931-2840
경기지청(대표지청)	노사상생지원과	031-259-0347
성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788-1516
안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63-7420
안산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12-1937
평택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1-646-1125
강원지청(대표지청)	근로개선지도과	033-269-3567
강릉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650-2514
원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769-0806
태백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33-550-8623
영월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33-371-6236

부산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1-850-6335
부산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559-6618
부산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309-1563
창원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5-239-6557
울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52-228-1837
양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370-0962
진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760-6504
통영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650-1932
대구지방고용노청	노사상생지원과	053-667-6270
대구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3-605-9056
포항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271-6746
구미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450-3522
영주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639-1152
안동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851-8033
광주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62-975-6314
전주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63-240-3373
익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839-0016
군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450-0529
목포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280-0139
여수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650-0198
제주근로개선지도과	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	064-728-7127
대전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42-480-6273
청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299-1163
천안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41-560-2885
충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840-4067
보령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1-930-6126
서산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41-661-5646